



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관한 문화재청·서울시 간 양해각서



서울특별시(이하 서울시)와 문화재청은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‘광화문 시대,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 조성’(이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)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여 공동추진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서울시(이하 양 기관) 간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범위)

양 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실히 검토하고, 긍정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.

1. 역사광장 조성 사업 : 과거 외세에 의해 훼손된 경복궁을 온전하게 복원하고 광화문 전면에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재 복원 및 월대 등 복원을 위한 부대사업 등
2. 시민광장 조성 사업 : 중앙분리대처럼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도시와 하나의 공간으로 융화될 수 없었던 기존 광장을 보행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, 도심 녹색교통을 활성화 하는 교통체계 개편 사업 등

제3조(협력내용)

- ① 각 기관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.
- ②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되, 조속히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타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한다.
- ③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 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시행)

- ① 역사광장 조성 관련 광화문 월대 복원 등 핵심 문화재 복원 사업은 문화재청 주도로 시행한다.
- ②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설계·공사 등 통합적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후 동시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행정)

- ① 본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처리한다.
- ②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결정 및 대외발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를 한 후 실시한다.

제6조(효력)

본 협약서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종료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협약의 효력은 연장·존속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월 10일

서울특별시장
박원순



문화재청장
김종진

